

**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** (제4조 관련)

| 구 분    | 사업종류<br>항만별<br>내 용   | 일반하역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정하역사업  |
|--------|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       |  | 1 급 지 ( 부 산<br>항, 인천항,<br>울산항, 포항<br>항, 광양항) | 2급지(여수항,<br>마산항, 동<br>해·목호항,<br>군산항, 평<br>택·당진항) | 3 급 지 ( 1 급<br>지와 2급지<br>를 제외한<br>항) |   |
| 1. 시설  | 시설평가액<br>(해양수산부<br>령으로 정하<br>는 하역장비<br>의 평가액이<br>총시설평가액<br>의 3분의 2<br>이상이어야<br>한다) | 10억원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억원 이상   | 1억원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하역사업<br>의 등록기준<br>을 적용하되,<br>관리청은 이<br>용자, 취급화<br>물 또는 항만<br>시설의 특성<br>을 고려하여<br>그 등록기준<br>을 완화할 수<br>있다. |
| 2. 자본금 |  | 2억원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억원 이상   | 5천만원<br>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
비 고

1. 관리청은 물동량(物動量) 감소, 항만 조건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지 항만에 대해서는 항만별로 그 사정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해당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.
2.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.
3. 관리청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가 보유하는 하역장비를 전용(專用)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용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중 그 전용하여 사용하는 하역장비의 평가액에 해당하는 하역장비의 확보를 유예할 수 있다.
4.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. 다만, 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 중 급지별 최저 시설평가액의 3분의 2 이상은 본인이 소유한 것이어야 한다.
  - 가.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
  - 나.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